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077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. 12. 17.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2019년 8월 6일 이승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2020년 5월 25일 이승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 298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(2020.12.17.)에서 일괄상정하여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, 그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심사결과 계류중인 의안번호 830와의 병합심의 필요성 발생.
- 동물의 사육·관리·보호 및 동물 공연 및 전시 등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이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두 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, 일부 수정함.
-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정의를 명시함 (안 제2조)
-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의 원칙을 명시함 (안 제28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 및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「식품위생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등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”를 “사항과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”로, “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, 동물”을 “동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호의2(중전의 제1호) 중 “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제1호”를 “제1호”로 한다.

1. “동물”이란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(동물보호 등의 원칙) ①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·관리·보호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동물원 동물의 경우 야생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, 관람·공연 등을 위하여 동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동물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할 것
2.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고,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

3. 관람·공연 등에 필요한 동물의 교육은 생명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, 동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공연 및 이를 위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
 4.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위임된 <u>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,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. “유실·유기동물(이하 “유기동물 “이라 한다) “이란 「<u>동물보호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 “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.</p> <p>2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사항과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</u>----- <u>동물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동물”이란 「<u>동물보호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 “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</p> <p>1의2. ----- ----- <u>제1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8조(동물보호 등의 원칙) ① 누</u></p>

구든지 동물을 사육·관리·보호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동물원 동물의 경우 야생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, 관람·공연 등을 위하여 동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동물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할 것

2.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고,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

3. 관람·공연 등에 필요한 동물의 교육은 생명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, 동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공연 및 이를 위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

4.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

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
않도록 할 것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
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
다.